

##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93년 8월 27일

나. 제안자 : 부천시장

다. 회부일자 : 93년 8월 27일

라. 상정일자 : 93년 9월 9일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회계과장 원태희)

#### 가. 제안이유

- 동일 자치단체내의 국·공유재산 치분, 관리에 있어서 대부료 산출기준, 납부기한 등이 상이하여 이를 조정하고,
- 공유재산 매각시 계약보증금을 현재 대금완납시 반환하고 있어서 이를 매각대금 납부로 간주하도록 하고,
- 건물점유 토지의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확대하고,
- 불필요한 첨부서류를 생략하여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며,
- 배배, 대부, 교환시 조례·규칙 규정내용과 서식내용이 상충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함.

#### 나. 주요골자

- 대부료 납부기한을 개약일로부터 60일이내로 하여 30일 연장 (조례26조)
-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의 확대 (조례39조의 2)
  - 일단의 토지매각 면적 제한 완화 및 건물집단화 토지매각 규정
- 대부 및 사용허가 제출서류 생략
  - 도시계획확인원, 인감증명서 등 (규정제30조등)
- 공유재산 매각시 계약보증금은 최초분납금, 납부시 매각대금 납부로 간주함(별지제16조서식)

###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례안 제39조 2의 규정은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됨으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수의계약에 관한 재량권이 확대되는 것이 아닌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유지의 경우 2,000㎡의 면적이 없을뿐 아니라 공유지를 매각할 경우 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함으로 확대되는 사항은 아님.</li> </ul>

##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 5. 심사결과

- 원안가결

##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8. 체계적 심사내용

##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92
의안 년 월 일	93. 9. 10 (제22회)

제출년월일 : 1993. 8. 27

제출자 : 부천시장

## □ 제안사유

- 동일 자치단체내의 국, 공유재산 처분, 관리에 있어서 대부분 산출기준, 납부기한 등이 상이하여 이를 조정하고,
- 공유재산 매각시 계약보증금을 현재 대금완납시 반환하고 있어서 이를 매각대금 납부로 간주하도록 하고,
- 건물집유토지의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확대하고,
- 불필요한 침부서류를 생략하여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며,
- 매매, 대부, 교환시 조례, 규칙 규정내용과 서식내용이 상충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함.

## □ 주요골자

- 대부료 납부기한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하여 30일 연장(조례26조)
-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범위의 확대(조례39조의2)
  - 일단의 토지매각면적 제한 완화 및 건물집단화 토지 매각규정
- 대부 및 사용허가 제출서류 생략 - 도시계획확인원, 인감증명서등(규정제30조등)
- 공유재산 매각시 계약보증금은 최초분납금 납부시 매각대금 납부로 간주함(별지제16호서식)

## 부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중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의 운영”을 “마을회관, 노인회관 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2조의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으로 한다.

제22조 제4호중 “영 제95조 제1항”을 “영 제95조 제2항”으로 한다.

제25조 제2호 나목 다음에 “다. 지하선은 제3호를 적용한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중 나목 내지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바목 및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

마.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바.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사. 지하3층 이하는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

제26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의 “30일이내”를 각각 “60일이내”로 한다.

제39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 직할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이하로서 1981. 4. 30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한 건물이 있는 토지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전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보호의 1,000㎡ 또는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조례)

현 행	기 정 (안)
제5조(마을회관등의 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u>마을회관</u> 또는 <u>노인회관</u> 의 운영 및 그 관리업무를 마을을 대표하는 "마을회"에게 무상으로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마을회관등의 위탁관리)  ① _____ _____ <u>마을회관</u> , <u>노인회관</u> 또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32 조의 농어촌 정주생활권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그 관리업무를 마을을 대표하는 "마을회"에게 무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략)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영 제100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 대금의 일시 전액납부가 곤란하여 분할납부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3. (생략)  4. 영 제9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6호내지 제8호, 제11호, 제13호, 제14호, 제16호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초)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합납부등) 영 제100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 대금의 일시 전액납부가 곤란하여 분합납부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3. (현행과 같음)  4. _____ <u>제2항</u> _____ _____
1. (생략)  2. (생략) 가. (생략) 나. (생략) (신설)  3. (생략) 가. (생략)	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초)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u>지하실은 제3호를 적용한다.</u> 3.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이상은 " 3분의 1	라. 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
마. 지하실(2층이하 건물의 지하실포함) 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신 설)	마. 지하실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마.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사.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각 5분 의 1
제26조(대부료의 납기) ①도유재산의 대부료 는 당해 년도분을 다음에 기재한 납기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체결일도 의 대부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이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대부료의 납기) ① ----- ----- ----- ----- ----- 60일
1. (생 랴)  2. 징작이외의 목적으로 대부한 물건에 대 하여는 대부계약기간이 1년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이내	1. (현행과 같음)  2. ----- ----- 60일 ----- ----- 60일
제39조의 2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 우) 영 제95조 제2항 제24호에 의한(중략) 1-2. (생 랴) (신 설)	제39조의 2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 우) 영 제95조 제2항 제24호에 의한 (중략) 1-2. (현행과 같음) •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 직할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이하로서 1981. 4. 30 이전부터 지 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 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건물이 있는 토

현 행	개 정 (안)
	<p><u>지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 배이내 토지(건물 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접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 또는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법위내에서 매각 할 수 있다.</u></p>

“정직한 도정 잘사는 새경기”  
(관인생략)

경      기      도

우 441-701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3가 1번지 / 전화(033)48-6925 / 전송42-4300

문서번호 회개 13330-1762

시행일자 1993. 8. 7 (준영구)

경      유  
수      신      수신처참조  
참      조

선 길			지 시	조정위원회 의회	
	접 수	일자 시간 번호		진 재 공 람	
		93. 8. 9 1011			
	처 리 과				
	답 당 자				

제      목      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준칙(안) 및 시행규칙중 개정규칙준칙(안)시단

1. 제정13330-462('93. 7. 22)호와 관련입니다.

2. 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준칙(안)과 동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준칙(안)을 별  
첨과 같이 시단하니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준칙(안) 1부  
2. 시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준칙(안) 1부 끝.

경      기      도      지      사

내      무      국      장      전      길

수신처 : 리(회개, 제부과장)

“「신한국 창조」는 「신경기인」운동으로！”

## 시·군공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준칙(안)

시·군공유재산관리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의 운영”을 “마을회관, 노인회관 또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32조의 농어촌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으로 한다.

제22조 제4호 중 “영 제95조 제1항”을 “영 제95조 제2항”으로 한다.

제25조 제2호 나목 다음에 “다. 지하실은 제3호를 적용한다”를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나목 내지 마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바목 및 사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다. 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라. 4층 이상은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

마. 지하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

바. 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

사. 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

제26조 제1항 본문 및 제2호의 “30일이내”를 각각 “60일이내”로 한다.

제39조의2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 직할시 및 시지역에서는 1,000㎡이하, 기타지역에서는 2,000㎡이하로서 1981. 4. 30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땔한 건물이 있는 토지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점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 또는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법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마을회관등의 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의 운영 및 그 관리업무를 마을을 대표하는 "마을회"에게 무상으로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마을회관등의 위탁관리)  ① .....  마을회관, 노인회관 또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32 조의 농어촌 정주생활권개발사업으로 시행한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운영 및 그 관리업무를 마을을 대표하는 "마을회"에게 무상으로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생 랴)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영 제100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 대금의 일시 전액납부가 곤란하여 분할납부 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3. (생 랴)  4. 영 제95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6호내지 제8호, 제11호, 제13호, 제14호, 제16호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초)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합납부등) 영 제100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잡종재산의 매각 대금의 일시 전액납부가 곤란하여 분합납부 등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3. (현행과 같음)  4. .....  .....  .....  제25조(건물대부료 산출기초)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대부료 산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다. 지하실은 제3호를 적용한다.  3. (현행과 같음)  가. (현행과 같음)
1. (생 랴)  2. (생 랴)  가. (생 랴)  나. (생 랴)  (신 설)  3. (생 랴)  가. (생 랴)	



현 행	개 정 (안)
	<p><u>지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 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집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 또는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 할 수 있다.</u></p>

## 시·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준칙(안)

시·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1항중 제8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 도유재산가격평정조서중 "수량" 다음에 "공시지가"란을 신설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공유재산대부계약서중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읍의 대부료 납기는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고 납부기한후의 연체요율은 동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공유재산매매계약서중 제2조및 제4조,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① 읍은 제1조의 매수대금중 계약체결일에 일금 원정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회 수	분 납 금	이 자	납 부 기 일	회 수	분 납 금	이 자	납 부 기 일

② 읍은 제1항의 대금납부기간중 대금잔액에 대하여 연 할 품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 공작물 기타 시설인 때에는 잡이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잡을 보험금수취인으로 재산매각대금상당액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부천시시립도서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93년 8월 27일

나. 제 안 자 : 부 친 시 장

다. 회부일자 : 93년 8월 27일

라. 상정일자 : 93년 9월 9일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시립도서관장 조호섭)

가. 제안이유

-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중 민원인이 원하여 복사 제공시 자료의 범위, 제한, 복사료 수납처리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현 행	개 정 (안)
나. <u>2층은 부지평가액의 2분의 1</u>	나. <u>2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u>
다. <u>3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u>	다. <u>3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u>
라. <u>4층이상은 " 3분의 1</u>	라. <u>4층이상은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u>
마. <u>지하실(2층이하 건물의 지하실포함)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u>	마. <u>지하실 1층은 부지평가액의 3분의 1</u>
(신 설)	바. <u>지하2층은 부지평가액의 4분의 1</u>
(신 설)	사. <u>지하3층이하는 부지평가액의 각 5분의 1</u>
제26조(대부료의 납기) ① 도유재산의 대부료는 당해 년도분을 다음에 기재한 납기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체결연도의 대부료는 계약체결일로부터 <u>30일</u> 이내에 납입하게 하여야 한다.	제26조(대부료의 납기) ① _____ _____ _____ <u>60일</u> _____ _____ _____ _____ _____ <u>60일</u> _____ <u>60일</u> _____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경작이외의 목적으로 대부한 물건에 대하여는 대부계약기간이 1년이내의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u>30일</u> 이내, 1년이상의 경우에는 매년 당초 계약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u>30일</u> 이내	2. _____ _____ <u>60일</u> _____ <u>60일</u> _____
제39조의 2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95조 제2항 제24호에 의한(중략) 1-2. (생 략) (신 설)	제39조의 2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영 제95조 제2항 제24호에 의한 (중략) 1-2. (현행과 같음) 3.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특별시, 직할시 및 시지역에서는 <u>1,000㎡</u> 이하, 기타지역에서는 <u>2,000㎡</u> 이하로서 1981. 4. 30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소유 이외의 건물이 있는 토지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인가를 받은 건물이 있는 토지

현 행	개 정 (안)
	<p><u>지포함)의 경우에는 동 건물 바닥면적의 2배이내 토지(건물 바닥면적의 2배를 제외한 잔여면적이 건축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 잔여면적도 포함)를 동 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 다만 다수의 지방자치단체 소유이외의 건물이 밀집하여 집유된 토지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가치가 없는 경우에는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000㎡ 또는 2,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집단화된 부분에 한하여 위 매각범위내에서 매각 할 수 있다.</u></p>

## 시·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준칙(안)

시·군공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제1항중 제8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3호서식) 도유재산가격평정조서중 "수량" 다음에 "공시지가"란을 신설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공유재산대부계약서중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읍의 대부료 납기는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고 납부기한후의 연체요율은 동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16호서식) 공유재산매매계약서중 제2조및 제4조,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 ① 읍은 제1조의 매수대금중 계약체결일에 일금 원정을 납부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분납하기로 한다.

회 수	분 납 금	이 자	납 부 기 일	회 수	분 납 금	이 자	납 부 기 일

② 읍은 제1항의 대금납부기간중 대금잔액에 대하여 연 할 품의 이자를 붙여서 납부하여야 하며 매수재산이 건물, 공작물 기타 시설인 때에는 잡이 지정하는 화재보험회사에 잡을 보험금수취인으로 재산매각대금상당액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부천시시립도서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93년 8월 27일

나. 제 안 자 : 부 친 시 장

다. 회부일자 : 93년 8월 27일

라. 상정일자 : 93년 9월 9일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시립도서관장 조호섭)

가. 제안이유

-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중 민원인이 원하여 복사 제공시 자료의 범위, 제한, 복사료 수납처리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